

## 2025년도 예비창업패키지(딥테크 분야) 모집공고

AI·반도체·바이오 등 딥테크 기술이 핵심 산업분야로 부상함에 따라, 딥테크 기술과 사업모델(BM)을 보유한 혁신적인 예비창업자를 발굴·지원하는 『2025년도 예비창업패키지(딥테크 분야)』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5년 7월 11일  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- ※ K-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(SCI)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.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.
  - ① 실명등록 대상 : 개명인, 외국인,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
  - ② 실명등록 경로 : [www.siren24.com](http://www.siren24.com) (☎1577-1006)
- \*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
- \* K-Startup 누리집 - 고객센터 - 온라인매뉴얼 - 일반매뉴얼 - K-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
- ※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(기업)는 통보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「예비창업패키지(딥테크 분야)」 '협약체결 약속서'를 제출해야 합니다.

### 1 사업 개요

- 사업목적** : 빅데이터·AI 등 딥테크 기술 분야의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
- 지원대상** : 딥테크 5대 분야\*의 예비창업자
  - \* ①빅데이터·AI, ②바이오·헬스, ③미래모빌리티, ④로봇, ⑤친환경·에너지 등 5개 기술 분야
- 지원내용** : 사업화 자금 (평균 0.5억원), 창업프로그램 등
- 협약기간** : 협약시작일로부터 5개월 이내
- 선정규모** : 총 82명 내외

<기술 분야별 선정 규모(안) >

기술분야	빅데이터·AI	바이오·헬스	미래모빌리티	로봇	친환경·에너지
선정규모	42명 내외	12명 내외	12명 내외	8명 내외	8명 내외

\* 분야별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,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선정평가를 진행(주관기관별 경쟁률에 따라 선정 규모가 변동될 수 있음)

**< 딥테크 기술별 예시 >**

기술 분야	기술 예시
빅데이터·AI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데이터 수집, 데이터 분석·관리·보안, 데이터플랫폼 등 데이터 솔루션 등</li> <li>• 인공지능 소프트웨어, 인공지능서비스, 인공지능 하드웨어 등</li> </ul>
바이오·헬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인공지능 의료기기, 디지털 치료기기, 전자약, 고령친화·재활시스템, 모바일 및 웨어러블 헬스케어 시스템, 데이터 기반 개인 건강 관리 시스템 등</li> <li>• 유전자·세포 치료제, 감염병 백신·치료제, 합성 생물 제조 시스템, 목표 질환 치료 신약 등 바이오의약품</li> </ul>
미래모빌리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자율주행 알고리즘, 자율 협력 주행 등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</li> <li>• 도심항공교통(UAM, Urban Air Mobility), 드론 등</li> <li>• 무인배송, 자율주행 화물 운송 등 스마트 물류</li> </ul>
로봇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능형 물류·배송 로봇, 푸드테크 로봇, 행동 보조용 웨어러블 로봇, 돌봄 로봇, 환자 보조 로봇, 지능형 가정용 로봇, 3D 센싱 기술 등</li> </ul>
친환경·에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수소, 바이오 연료 등 청정연료의 생산, 저장·이송 등</li> <li>• 태양광, 태양열, 풍력, 수소,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활용하는 제품·서비스</li> </ul>

※ 융합기술의 경우 핵심기술 보유 분야로 택1 자율 선택(중복지원 불가)

※ 예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청자가 기술 분야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 가능

**지원내용** : 사업화 자금 (평균 0.5억원), 창업프로그램 등

구분	지원내용
사업화 자금	• 시제품 제작, 사업모델(BM) 개선, 제품·서비스 고도화 등 소요 자금 지원
창업프로그램	• 기술이전, BM 수립, 아이템 구현, 투자유치 등 주관기관별 딥테크 분야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

**2 세부 지원 내용**

구분	지원 세부 내용
사업화 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제품 제작, 지적권 취득, 사업모델 (BM) 개선,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<b>사업화 자금 평균 0.5억원 지원</b></li> <li>*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(정부지원사업비) 차등 지원</li> <li>** 사업화 자금(정부지원사업비)은 신청자의 신청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</li> <li>• 사업화 자금(정부지원사업비)을 <b>사업 단계별(총 2단계)로 차등 지원</b></li> <li>- (1단계) BM 구체화를 위한 시장조사 및 최소기능 제품(MVP) 제작을 위한 <b>사업화 준비 자금 지원(20백만원 내외)</b></li> </ul>

- (2단계) 협약 중간 시점에 1단계 사업계획 진척도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평가하여 **사업화 자금 추가 지원(40백만원 내외)**

• 총사업비 = 정부지원사업비 100% (자기부담사업비 없음)

**<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 >**

비 목	비목 정의
재료비	•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,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
외주용역비	• 예비창업자가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
기계장치 (공구기구, 비품, SW 등)	•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, 비품을 구매하는 비용
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	• 사업계획서상의 창업 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·등록 관련 비용
인건비	• 채용 예정 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,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* 신청자(예비창업자)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는 인건비 지급 불가
지급수수료	•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(기술이전비,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, 멘토링비, 시험·인증비, 기자재 임차비 등)
여비	• 신청자(예비창업자) 및 소속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
교육훈련비	• 신청자(예비창업자) 및 소속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
광고선전비	• 신청자(예비창업자)의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, 포장 디자인비,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
창업활동비 (월 50만원 한도)	• 창업(준비) 활동에 필요한 문헌 구입, 소모품 구입 등에 소요 되는 경비

• 기술이전 프로그램, BM 수립, 아이템 구현, 투자유치 등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딥테크 5대 분야 예비창업자 지원

**창업 프로그램**

유형	프로그램 예시
① 기술이전	기술 융합 등을 위한 기술이전 컨설팅 또는 멘토링 등
② BM 수립	BM 발굴, 팀 빌딩, BM 고도화
③ 아이템 구현	MVP 제작, 시장 검증, 멘토링
④ 투자유치	투자 교육, 모의 및 실제 투자 IR
⑤ 자율 프로그램	주관기관이 예비창업자의 수요를 반영하고 자체 보유한 강점과 역량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기관별 맞춤형 프로그램

### 3

## 신청자격 및 요건

### □ 신청자격

- 딥테크 5대 분야 기술 및 BM(사업모델)으로 창업을 희망하며, 사업공고일(25.7.11) 기준으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

-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자

\* 법인의 경우, 해산등기와 청산 종결 등기가 완료되어야 신청 가능

### □ 신청 제외 대상

####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

< ①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
2.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,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 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
3.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
4.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의 '재도전·재창업 재기지원보증'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·신용회복위원회의 '재창업 자금지원'을 받은 자

####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(기업)

< ②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2.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
####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(기업)

< ③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까지 환수금 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
2. 환수금 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은 자
3. 환수금 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 납부 중인 자 (분할 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2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)

#### ④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,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 ([붙임 1]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)

#### 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중 [붙임 2]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(기업) ※ 중단(중단처분·중도포기자) 포함

#### ⑥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'창업 사업화 지원사업'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(기업) ※ 중단(중단처분·중도포기자) 포함

- \* 단, 공고사업과 동일년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·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
- \* 「2025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(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-626호)」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사업 중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,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([붙임 3] 참조)

⑦ **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(기업)**

⑧ **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(사업비 계좌)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(기업)**

- \*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·등록이 되지 않은 자 (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, 가상화폐 거래소업, 가상화폐 개발업,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)

⑨ **2025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, 전담/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**

⑩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
⑪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(기업)

⑫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특정 기업의 발행주식을 전체의 50% 초과 보유한 과점주주인 자

⑬ 기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□ **의무 및 역할**

- 선정자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」 및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,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,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
\*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

-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

-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선정된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 까지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상의 창업(사업자 등록)을 이행하여야 함
- 선정자가 법인으로 창업할 경우,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, 사업비의 유용·횡령·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(선정자)에게 있고,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, 법인전환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
  - 정당한 사유 없이 창업 유지 의무 미이행 시, 중소벤처기업부·창업진흥원 창업지원사업 1년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 부여

#### 4

#### 접수기간 및 방법

□ **접수 기간 :** '25년 7월 16일(수) ~ 8월 5일(화), 16:00까지(16시 정각 마감)

#### < 유의 사항 >

-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**마감일 2~3일 이전에 'K-Startup 누리집' 가입 및 사업 신청**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
  - \* 신청 접수는 16:00 정각에 종료되며 이후 사업 신청, 작성 내용 수정 및 제출 불가
-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**'제출완료' 버튼을 클릭**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
- ③ **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**하고, 접수된(8.5. 16시 이후)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**수정 및 삭제 불가**

## □ 접수 방법

- K-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·접수 (www.k-startup.go.kr)
  - 신청·접수 시, K-Startup 누리집을 통해 **실명인증을 실시**하여야 하며, 사전에 **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**
  - \* **실명인증** : 서울신용평가정보(SCI)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(외국인, 개명인,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,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)
  - \*\*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'**[별첨 5] 사업 신청 매뉴얼**' 참고

### < 유의 사항 >

- ① **반드시 신청자(예비창업자) 본인이 신청**해야 하며, **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**
- ② 신청자는 사업 신청 시, **희망하는 1개의 주관기관 선택**
  - \* 해당 주관기관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, 창업프로그램 등 제공(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)
- ③ K-Startup 누리집 **신규 가입 시**, 아이폰 또는 휴대폰 개인인증을 통한 **본인 인증 필수**. **서울신용평가정보(SCI)**에 실명(개명)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K-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이 제한되므로 유의

## □ 제출 서류

- **사업계획서 1부** ([별첨 1] 양식)
  - \*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 (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)
- **기타 제출서류 각 1부** (해당 시, [별첨 2]의 '증빙서류 제출 목록 안내' 참고)

제출서류	제출 방법	비고
① 사업신청서	온라인 입력	-
② 사업계획서	파일 첨부	용량 제한 30MB
③ 증빙서류 (필수 증빙서류 등 포함) * 관련 증빙서류 누락 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		

## 5

## 평가 및 선정 절차

- **평가 절차** : 총 3단계 평가(서류 → 인큐베이팅 → 발표)를 통해 1단계 지원 대상자 선정, 중간평가를 통해 2단계 지원 대상자 차등 지원\*\*

\*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, 평가 결과 등은 **선택한 주관기관**에서 안내 예정

\*\* 중간평가(협약 중간시점)를 통해 2단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(2단계 지원 대상자는 별도 안내 예정)

### < 예비창업자 선정평가 절차(안) >

① 요건검토	② 서류평가	③ 인큐베이팅	④ 발표평가	⑤ 선정(1단계)
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	사업계획서 서면 평가 (1.5배수 내외 선정)	BM 구체화 및 멘토링 등 (서류평가 통과자 대상)	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발표 및 질의응답 (30분 이내)	정부지원사업비 등 선정 확정
'25.8월	'25.8월	'25.8월 말	'25.9월	'25.9월

신청자에 대한 요건검토, 사업계획서 유사·중복성 검토는  
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,  
선정·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·협약 취소 처리 예정

※ 상기 일정은 신청자(기업)의 수 등 대내·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 □ 평가 방법

- ① **요건검토** :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
- ② **서류평가** :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시행,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(최종 선정 규모의 1.5배수 내외)
- ③ **사전 인큐베이팅** :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BM 구체화 교육 및 멘토링을 통한 사업계획 보완 및 신청자 역량 검증
  - 사전 인큐베이팅은 교육·멘토링 등 신청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, 역량 검증 결과는 발표평가 시 참고 자료로 활용
  - \* 집체교육(1주 이내) 및 멘토링(30분 내외+질의응답) 예정, 현장 참석을 원칙으로 함
- ④ **발표평가** : 제품·서비스 개발 필요성, 개발계획,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, 신청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- 발표평가는 동 사업에 신청자가 참석하며,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·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

\* 평가시간 : 30분 이내 (발표 15분 + 15분 질의응답)

\*\* 평가방법 :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,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

\*\*\* 발표평가 장소 내 대표자(신청자) 외 직원 배석 불가

⑤ 1단계 선정 : 발표평가 고득점자순으로 1단계 지원 대상자 선정

- 최종선정 통보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(3일차 17시까지, 휴일불산입) 「예비창업패키지」 협약체결 약속서를 제출하여야 함

\* 기간 내 협약체결 약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, 선정이 취소되며 차순위자(후보자)에게 사업 참여 기회 부여

- 주관기관별 선정 규모 내에서 1단계 지원자를 선정하고, 정부지원 사업비\*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

\* 예비창업자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

- 평가 과정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비창업자는 주관기관 또는 창업진흥원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

\* 선정평가 결과, 예비창업자 역량이 본 사업 운영 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

□ **평가지표**

- 창업 아이템의 개발 배경 및 필요성, 사업기간 내 개발 계획, 사업화를 위한 차별성, 수익모델 등 성장전략, 대표자(신청자) 및 팀원의 보유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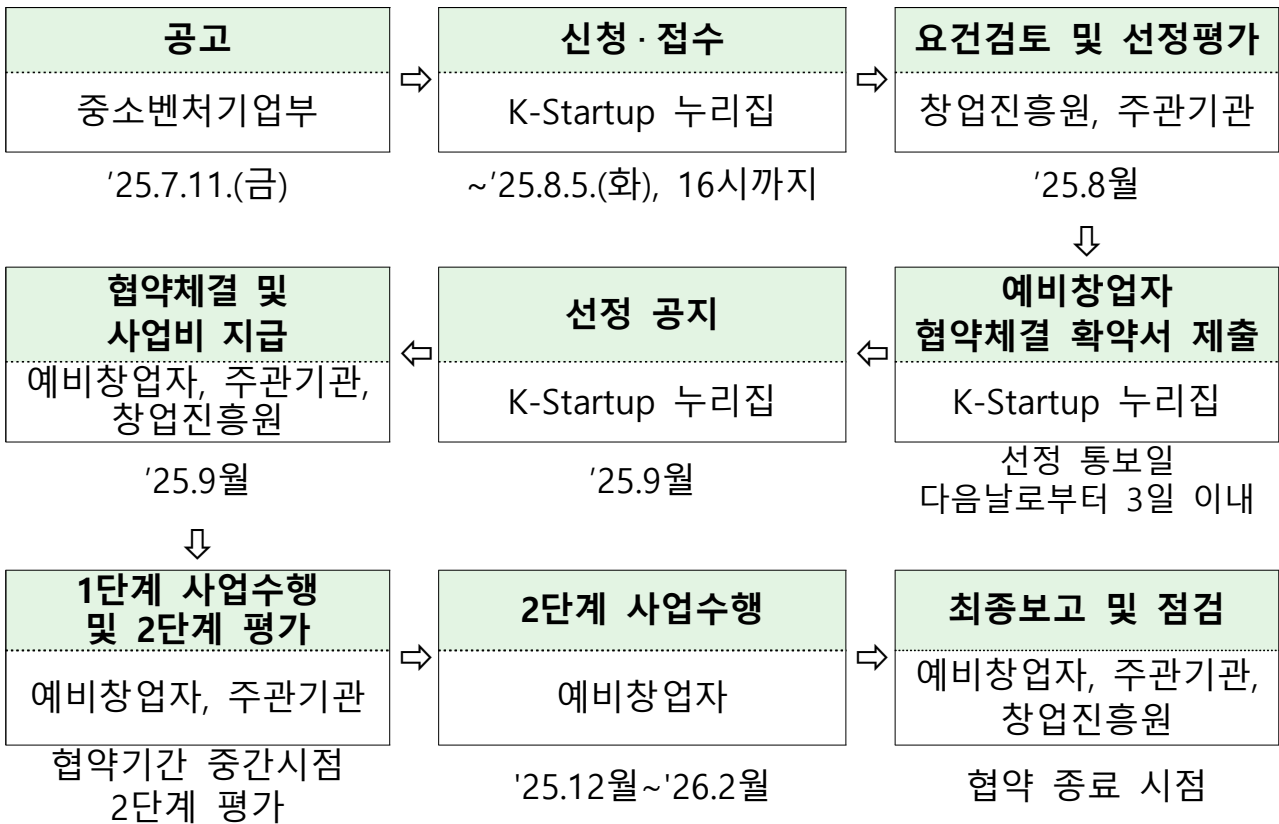
\* 주관기관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

< 서류·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>

평가항목	세부 내용
문제인식	• 창업 아이템의 개발 배경 및 필요성 등
실현가능성	• 창업 아이템의 사업기간 내 개발 또는 구체화 계획 등
성장전략	•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차별성, 수익모델, 자금조달 방안 등
팀(기업) 구성	• 대표자 및 고용 (예정)인력이 보유한 기술 역량과 노하우 등

## □ 사업 운영일정

※ 세부 일정은 대내·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

## 6

## 유의 사항

◆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예비창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.

- ①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,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「형법」,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 등에 따라 **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 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**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**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**될 수 있습니다.
-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, 작성자(대필자)와 신청자(대표자, 창업기업) 등 관련자 전원이 **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**될 수 있습니다.

※ 사업 신청 과정에서 **제3자(컨설턴트 등)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,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**해 주시기 바랍니다.

\* 창업진흥원 누리집([www.kised.or.kr](http://www.kised.or.kr)) > 고객광장 > 제3자 부당개입 신고

-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제32조 및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고의,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**해당자를 고발 조치**할 수 있습니다.

## 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동 사업 신청은 창업 (사업자등록) 예정인 당사자가 신청하여야 하며,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
-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, 중소벤처기업부 (창업진흥원 등)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(3년)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
  - \*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·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,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, 선정취소,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
  - \*\* 동일·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
- '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 (협약체결) 불가
  - 단, '25년도 이전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·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
  - \* (주의) 2개 이상 사업의 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으로 선정되는 경우,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, 최초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
- 동 사업 신청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·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
- 동 사업 신청자는 '25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'으로 참여 불가

## □ 평가 중 유의사항

-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
- 전 평가과정에 예비창업자(신청자)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,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
-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 (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)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 기관에 신청 가능
-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창업자(신청자)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

## □ 선정 후 유의사항

- 협약체결 협약서를 제출하는 경우, 협약서 제출 이전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절차에서 '제외' 처리됨
  - 단,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이미 '협약체결협약서'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, 최초 '협약체결 협약서'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(수행) 가능
- 제출한 협약체결 협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,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선정 또는 협약 취소,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「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」,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, 「동 사업 세부관리기준」, 창업

진흥원과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

-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,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, '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'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·운영됨
- 동 사업의 수시·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-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, 협약취소 등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음
-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 등으로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,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,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음
-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,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
-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(사업비 계좌) 개설 및 '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'을 통한 사업비 지출(회계처리)이 가능하여야 함

\* 지정 은행의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-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 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,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

## 7

## 기타 사항

## □ 문의처

- (시스템 문의) 국번없이 1357
- (사업 문의) 주관기관 담당자

No.	기술분야	주관기관명	담당자 연락처
1	빅데이터· AI	경기대학교	031-249-8702
			031-249-8703
2		연세대학교	02-2123-4306
			02-2123-4412
3		광운대학교	02-940-5223
			02-940-5224
4		인하대학교	032-860-9152
			032-860-9227
5	바이오· 헬스	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	043-710-5925
			043-710-5926
6	미래 모빌리티	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	044-860-3813
			044-860-3814
7	로봇	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	053-759-8132
			053-759-9654
8	친환경· 에너지	인천대학교	032-835-9686
			032-835-9687

## 붙임 1

## 지원 제외 대상 업종

- ▶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
NO.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일반유흥주점업	56211
2	무도유흥주점업	56212
3	카지노 운영업	91242
4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
5	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	-

※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[kssc.kostat.go.kr](http://kssc.kostat.go.kr)) 참고

## 붙임 2

##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 제외 사업 목록

- 예비창업패키지 (생애최초 포함)
- 초기창업패키지 (실험실특화 포함)
- 창업도약패키지 \* 성장촉진 프로그램 제외
-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
- 창업성공패키지 글로벌창업사관학교
- 창업중심대학
-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(~2023년)

**붙임 3****2025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**

연번	창업지원사업명	소관 부처
1	· 예비창업패키지	중소벤처기업부
2	· 초기창업패키지	중소벤처기업부
3	· 창업도약패키지	중소벤처기업부
4	· 초격차 스타트업 1000+ 프로젝트 (Micro Dips, AX 스타트업 육성, 팍리스 일관지원, 링크업 등)	중소벤처기업부
5	· 민관공동 창업자발굴 육성사업 (TIPS 사업화, 프리팁스, 포스트 팁스)	중소벤처기업부
6	· 통합창업패키지(특화창업패키지) 지원	중소벤처기업부
7	· 창업중심대학	중소벤처기업부
8	· 재도전성공패키지	중소벤처기업부
9	· 신사업창업사관학교	중소벤처기업부
10	·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	중소벤처기업부
11	· 창업성공패키지(청년창업사관학교)	중소벤처기업부
12	· 창업성공패키지(글로벌창업사관학교)	중소벤처기업부
13	·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	중소벤처기업부
14	·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	중소벤처기업부
15	· 예술기업 성장지원	문화체육관광부
16	·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창업도약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17	· 스포츠산업 창업중기(엑셀러레이팅)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18	· 콘텐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19	· 콘텐츠 액셀러레이터 연계 사업화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20	· 콘텐츠 투자 연계 사업화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21	· 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22	·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	문화체육관광부
23	· 관광벤처사업 공모전	문화체육관광부
24	·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	환경부
25	· 농식품 벤처육성지원	농림축산식품부
26	· 대전 방산혁신 클러스터 방산진입형 드론평화 창업지원	방위사업청
27	· 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(DATA-Stars)	과학기술정보통신부